

# 광양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일반공급 청약안내

## ● 일반공급 (1, 2순위) 신청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해당지역)	2021.08.31.(화) 08: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1순위(기타지역)	2021.09.01.(수) 08:00 ~ 17:30		
2순위	2021.09.02.(목) 08:00 ~ 17:30		

## ● 일반공급 청약자격

구분	순위별 조건				
	거주지역	당첨사실 제한 (규칙28조)	재당첨 제한 (규칙54조)	주택소유	청약통장
1순위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 거주 (세대주만 청약가능)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전국)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원 포함)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경우 (세대원 포함) ※ '청약홈' 청약제한 사항 확인	무주택자, 1주택자 가능 - 무주택자 : 가점제 - 1주택자 : 추첨제	청약통장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기타지역)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세대주만 청약가능)				
2순위	기타지역 거주자	관계없음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세대원 포함) 2순위 청약불가	관계없음	청약통장 가입자 (가입기간, 예치금액 무관)
전매제한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3년 초과 시 전매제한은 3년)				
향후 재당첨제한	2020.04.1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비입주자	각 타입별 일반공급물량의 3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 -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거나, 청약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해외체류 예외대상자인 '단신부임 해외체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공급신청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 전문 확인)</li> <li>1순위 청약 시 과거 2년 이내 다른 민영주택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합니다.</li> <li>청약통장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li> <li>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통장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li> </ol> </li> </ul>				

## ● 일반공급 청약자격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광양시 및 전라남도)	그 밖의 광역시(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전타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광양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일반공급 청약안내

## ● 청약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내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함.</p>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 53조에 따름.

# 광양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일반공급 청약안내

##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 · 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필요시 추가 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동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